

정책연구  
2015-02

#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오 상 봉



# 목 차

|                                   |    |
|-----------------------------------|----|
| 요 약 .....                         | i  |
| 제1장 서 론 .....                     | 1  |
| 제2장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              | 4  |
| 제1절 적용대상 .....                    | 4  |
| 제2절 최저임금 수준 .....                 | 5  |
| 제3절 최저임금 미준수 .....                | 8  |
| 제4절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특성 .....     | 9  |
| 제3장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가구의 실태 ..... | 12 |
| 제1절 임금근로자의 분포 .....               | 12 |
| 제2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가구 구성 ..... | 15 |
| 제3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실태 ..... | 19 |
| 제4절 소 결 .....                     | 22 |
| 제4장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  | 23 |
| 제1절 기존 연구 .....                   | 23 |
| 제2절 자료 및 분석방법 .....               | 25 |
| 제3절 추정 결과 .....                   | 27 |
| 제4절 소 결 .....                     | 31 |

|   |        |
|---|--------|
| 제5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 .....              | 33     |
| 제1절 기존 연구 .....                               | 34     |
| 제2절 자료 및 분석방법 .....                           | 36     |
| 제3절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부담 증감 .....                 | 38     |
| 1. 근로자의 임금분포 및 사업체의 원가구조 .....                | 38     |
| 2. 6% 최저임금 충격 시 인건비 비중 변화 .....               | 41     |
| 제4절 기타 고려사항: 최저임금 미준수 해소 시의 인건비<br>비중증가 ..... | 43     |
| 제5절 소 결 .....                                 | 45     |
| <br>참고문헌 .....                                | <br>51 |

## 표 목 차

|   |    |
|---|----|
| <표 2- 1>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추이 .....                              | 5  |
| <표 3- 1> 각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 .....                         | 13 |
| <표 3- 2> 종사상지위 또는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 .....                 | 13 |
| <표 3- 3> 업종별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 .....                            | 14 |
| <표 3- 4> 직종별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 .....                            | 15 |
| <표 3- 5> 각 가구 내 지위별 근로자의 임금분포 .....                       | 16 |
| <표 3- 6> 각 임금수준별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 분포 .....                    | 16 |
| <표 3- 7> 가구주의 임금수준별 가구원 분포 .....                          | 17 |
| <표 3- 8> 가구주의 임금수준별 배우자 임금분포 .....                        | 18 |
| <표 3- 9>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가구주 임금분포 .....                        | 18 |
| <표 3-10> 기타 가구원의 임금수준별 가구주 임금분포 .....                     | 19 |
| <표 3-11> 가구주의 임금수준별 가구의 소득 및 지출 .....                     | 20 |
| <표 3-12>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가구의 소득 및 지출 .....                     | 21 |
| <표 4- 1> Aaronson et al.(2012)의 주요 연구결과(1983~2008년) ..... | 24 |
| <표 4- 2> 관심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소비 및 소득 비교 .....                   | 27 |
| <표 4- 3> 최저임금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효과 추정 결과 .....                   | 28 |
| <표 4- 4> 전기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의 당기의 임금수준별 분포 ..                  | 29 |
| <표 4- 5>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총소득에 미치는 효과 .....                    | 30 |
| <표 4- 6> 최저임금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효과 추정<br>결과(2001~2004년) .....    | 30 |

|  |    |
|--|----|
| <표 5- 1> Riley & Bondibene(2015)의 주요 결과 .....            | 35 |
| <표 5- 2>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br>비중(2013년) ..... | 39 |
| <표 5- 3> 업종 및 규모별 인건비 비중(2013년) .....                    | 40 |
| <표 5- 4> 최저임금 6% 충격 시 인건비 비중 증가 .....                    | 42 |
| <표 5- 5> 현재 최저임금 준수 시 증가할 인건비 비중 증가(2013년) ..            | 44 |

## 그림목차

|   |    |
|---|----|
| [그림 2-1] 최저임금 수준 및 인상률 추이 .....             | 6  |
| [그림 2-2]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에 대한 국제비교(2014년) .....   | 7  |
| [그림 2-3] 최저임금의 상대수준에 대한 국제비교(2013년) .....   | 7  |
| [그림 2-4]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 .....              | 9  |
| [그림 2-5] 각 인구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 .....  | 10 |
| [그림 2-6] 인구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분포 .....    | 10 |
| [그림 2-7] 각 고용 현황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 ..... | 11 |
| [그림 2-8] 고용 현황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분포 .....   | 11 |





## 요약

가구주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일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의 추가적인 소득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가구주가 저임금을 받고 있는 가구일수록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거나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가구주가 고임금일 때보다 훨씬 많다. 이는 가구주가 저소득자일수록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가구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주가 최저임금의 95% 미만의 임금을 받는 가구들에서는 총 노동소득의 중위값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며 그러한 가구들의 지출의 중위값은 105만 원이다. 이러한 가구들은 이 전소득이 없이는 최소한의 지출도 충당하기 부족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가 저임금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고소득자일 확률은 훨씬 낮고 무직자일 확률은 더 높다. 이러한 가구에서는 가구주가 최저임금의 125%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50%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임금의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가구주가 무직일 확률도 거의 30%에 이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임금을 무시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은 개인을 넘어 이제 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에 가구주와 배우자의 비중이 매우 높는데, 가구주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그 가구주의 소득에 거의 전적으로 기대고 있으며, 배우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가구의 30%는 가구주의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 1.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KLIPS 13~16차(2000~13년)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소비를 증가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구분을 위해서는 Aaronson et al.(2012)의 방법을 따랐다.

추정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는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가구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2000~13년 동안 평균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10%대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가구의 소득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수 있다. 소득변화를 추정해 본 결과, 실제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득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임금변화를 살펴보다도, 최저임금의 95% 미만을 받던 근로자의 50%는 다음 해에도 계속 최저임금의 95% 미만을 받고 있었다.

최저임금 미준수가 문제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최저임금 미준수가 문제라면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낮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4~5%대인 KLIPS 4~7차(2001~04년)를 이용한 분석에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낮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미준수율이 높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가 다른 것은 미준수율의 차이 때문인지 분석 기간의 차이 때문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준수율이 높은 기간을 대상으로 미준수율을 제거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미준수율이 낮은 기간의 분석과 같은 결론이 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시기에 따라 다른 것이다.

## 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

최저임금 인상 시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 정확히는 업종 및 규모별 사업체의 부담 증가이다. 분석 대상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8개 업종(대분류)이며 이 업종들을 6개의 규모로 구분하였다. 같은 대분류 업종 내에서도 사업 특성의 이질성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어서 중분류 수준의 분석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부담의 증가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 증가로 측정하였다.

6%의 최저임금 충격, 즉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6% 더 높을 때, 영세사업자(4인 이하 사업체)의 인건비 비중 상승은 0.1%p에서 0.7%p 사이에 있다. 고용규모가 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비중은 0.3~0.4%p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최근 그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에서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비중은 0.6%p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영세사업자 부담은 0.13%p만 증가하지만, 업종 내에서 이질성이 커서 복지서비스업의 경우 0.33%p 증가한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에 속한 영세사업체의 부담 증가는 매우 커서 0.6%p가 넘을 것이다. 6%p의 최저임금 충격은 현실과 대비해서 매우 큰 충격인데, 이러한 충격에도 사업체의 부담 증가의 평균은 0.5%p 내외로 아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제시된 값은 업종 및 규모의 부담 증가의 평균이라는 점이다. 어떤 업종 및 규모에 속한 모든 사업체의 부담 증가가 그 업종 및 규모의 부담 증가 평균과 일치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부담 증가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사업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기업의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미준수를 완전히 해소하

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 증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충격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를 계산할 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최저임금 미준수라는 위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의 부담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미준수율을 낮추지 않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준수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영세사업자가 최저임금 미준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2%p의 인건비 비중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서비스업이나 보건·복지서비스업과 같이 1%p보다 낮은 업종도 있지만, 도매·상품중개업이나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p가 넘는다. 영세사업자들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1~2%p의 인건비 비중 증가의 충격이 한 번에 주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사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 제 1 장 서 론<sup>1)</sup>

1988년 400원대의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은 200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에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인상되었고 최근에도 매년 7%대로 인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이중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없이는 적정수준의 임금인상도 기대하기 힘든 근로자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쪽에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에 목매는 저임금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노심초사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있다. 자영업자의 짧은 사업 기간과 높은 폐업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투자비는 고사하고 자신의 인건비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도 회수하기 힘든 자영업자에게는 매월 몇 만 원의 인건비 지급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양쪽 당사자의 엇갈린 이해관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 구간에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하였고,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사용자 측 두 위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하였다.

---

1) 본 보고서의 초고는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2015년 11월 12일)에서 발표된 바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로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근로자가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느냐이다. 전통적인 수요공급이론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높아지면 고용주는 고용규모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는 해고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서는 20세기 초중반까지 치열한 이론 및 실증 논쟁이 있었지만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2년 ILLR(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특집호에 실린 일련의 논문들과 Card and Krueger(1994)의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수요독점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논문은 다수 발표되었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결과와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다.<sup>2)</sup>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아닌 최저임금이 야기하는 다양한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중에서 불평등/빈곤 완화, 가격 인상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당히 축적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빈곤 완화에 대해서는 한두 편의 글이 소개되었고,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2015년이 되어서야 하나의 글<sup>3)</sup>이 발표되었을 뿐이다. 최저임금이 가져올 영향의 다양한 측면 대부분이 아직 미지의 연구 주제로 남아 있다.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영향 중에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연구된 바는 거의 없지만 최저임금 논의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각종 국제비교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저

2) 대표적인 연구로 남성일(2008)과 이병희(2008)를 들 수 있는데, 남성일(2008)은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적용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이병희(2008)는 개인별 노동력 상태 이행을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직장 유지율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3) 강승복(2015).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구에서 저임금근로를 생계의 주요 원천으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가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한다. Piketty(2014) 이후에 시작된 소득주도성장 바람이 올해 초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임금인상을 통한 성장 발언으로 사회적인 화두가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 증가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자의 경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사용자 측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실제로 계산한 결과는 아직 제시된 바 없다. 경영상의 어려움 가중 정도는 이윤의 증감으로 측정되어야 하겠지만 가용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비 인건비의 증가 정도를 대신 제시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용한 방법론에 따라 상이하고 그 방법론들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생산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논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제시된 장단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론을 찾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소개한다. 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현 상황에 대해서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실태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소비의 증가로 연결되는지를 검증한다. 제5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비 인건비로 측정되는 인건비 부담을 얼마나 가중시키는지 제시한다.

## 제 2 장

###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에 최초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듬해인 1988년부터 최저임금이 최초로 적용되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정 전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법 규정이 존재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사회부(이후 노동부 장관)가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일정한 업종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행된 바는 거의 없다.

#### 제1절 적용대상

최저임금법은 가족종사자, 선원, 신체 또는 정신장애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 것은 2000년 11월 24일 이후의 일로, 그 이전에는 10인 또는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나 제조업 종사자에게만 적용되었다.

최저임금법에는 감액규정이 있는데, 고용주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보다 10%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감시·단속근로자에게도 감액규정이 2014년까지 적용되었으나 2015년부터 폐지되었다.



〈표 2-1〉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추이

| 적용 시기                  | 적용대상         |              | 적용근로자 비율(%) |
|------------------------|--------------|--------------|-------------|
|                        | 산업           | 규모           |             |
| 1988. 1.~1988. 12.     | 제조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1        |
| 1989. 1.~1989. 12.     | 제조업, 광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4.5        |
| 1990. 1.~1999. 8.      | 전 산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61.6        |
| 1999. 9.~2000. 11. 23. | 전 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78.7        |
| 2000. 11. 24.~         | 전 산업         | 전 규모         | 100.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정진호 외(2011, p.11)에서 재인용.

## 제2절 최저임금 수준

2015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5,580원이며,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임금을 지급하는 측과 임금을 받는 측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매우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한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최저임금 인상 추세와 다른 국가들의 최저임금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독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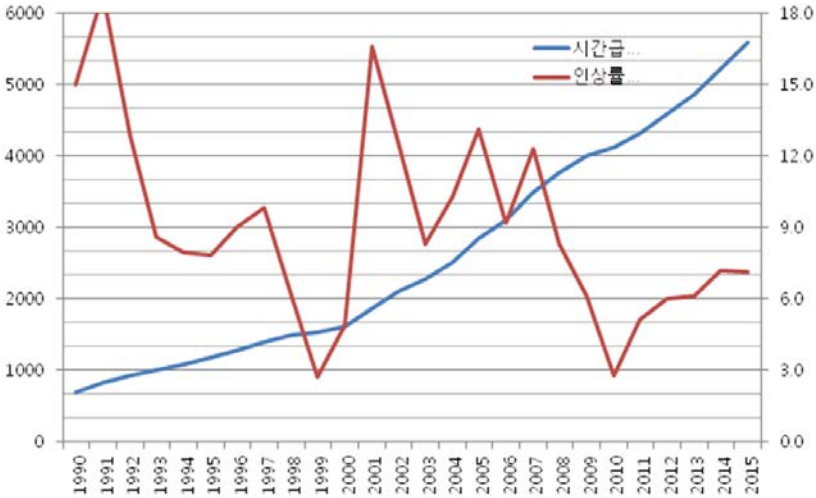
최저임금이 최초로 적용된 1988년의 최저임금은 약 400원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에 20% 이상 인상되고 이후 3년간 10% 이상 되면서 1993년에는 1,005원이 되었다. 그 후 4,000원이 된 2009년 이전까지는 매년 10% 가까이 인상되었다.<sup>4)</sup> 2009년부터는 인상률이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매년 5~8% 인상되고 있다.<sup>5)</sup> 최저임금 도입 초기의 매우 높은 인상률과 2000년대 초·중반의 10%를 넘는 인상률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인상

4)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결정된 1999년과 2000년의 최저임금은 각각 2.7%, 4.9% 오르는 데 그쳤지만, 이후 2년간 16.6%, 12.6% 인상되어 이전의 낮은 인상률을 보상이었다.

5) 2010년에는 예외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6 최저임금이 가게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그림 2-1) 최저임금 수준 및 인상률 추이



주: 1990~93년은 연간, 1994년은 1~8월, 1995~2005년은 전년도 9월에서 당해 연도 8월까지, 2006년은 2005년 9월에서 2006년 12월 말까지, 2007년 이후에는 연간 적용되었음.

자료: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률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최저임금액이 과거에 비해 매우 크고 평균 임금인상률이 낮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국가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9달러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북유럽 국가들까지 포함한다면 순위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연도별 변화를 본다면 한국의 현재 순위가 그리 실망할 필요는 없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최저임금 순위에서 앞서 있던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을 지금은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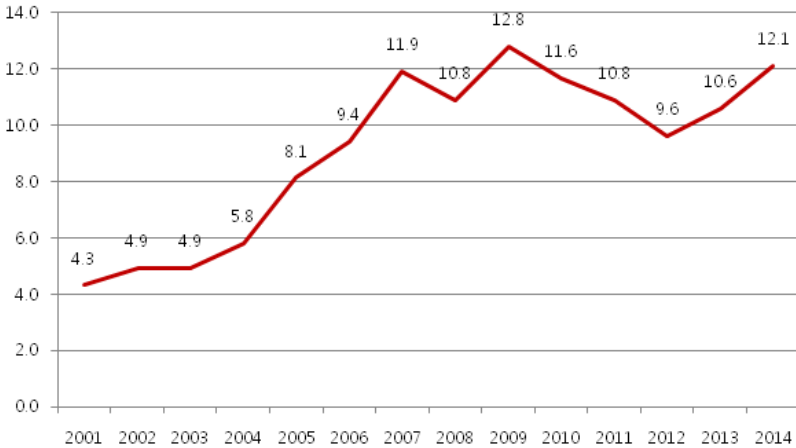
경제발전 수준이 매우 다른 두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주로 이용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간임금 대비 44%, 평균임금 대비 35%이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중간에 있는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 제3절 최저임금 미준수

한국은 최저임금 미준수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규정을 갖추고 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과(併科)도 가능하다.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했거나, 도급계약 기간 중에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춘 경우에는 도급인이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와 연대하여 지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처벌규정 외에도 근로자가 사업주의 최저임금 미준수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주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제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12.1%에 이른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최저임금액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2000년대 말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미만율이 조금씩 낮아졌으나 최근에 인상률이 다시 높아지면서 미만율이 높아졌다.

[그림 2-4]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 제4절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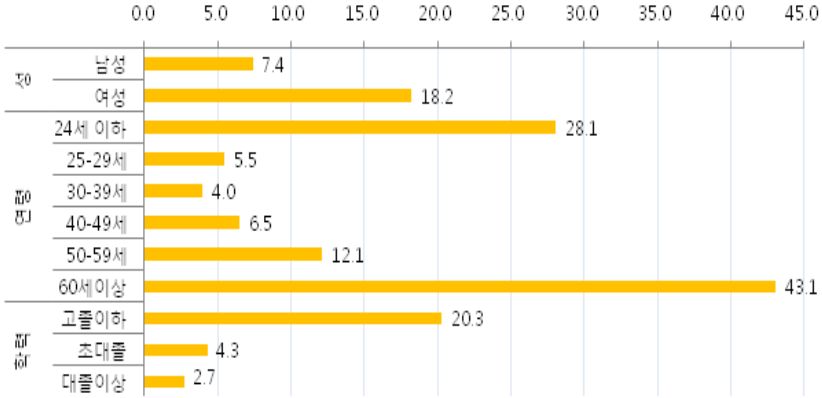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른 나라와 대체로 비슷하다. 여성, 청년층, 고졸 이하의 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더 많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은 60대 이상 연령대의 근로자 중 거의 절반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의 은퇴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위법한 저임금도 감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형태나 사업장 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분포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규모 및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많이 받는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45.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보면, 음식숙박업 종사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4.2%를 차지한다.

10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그림 2-5) 인구 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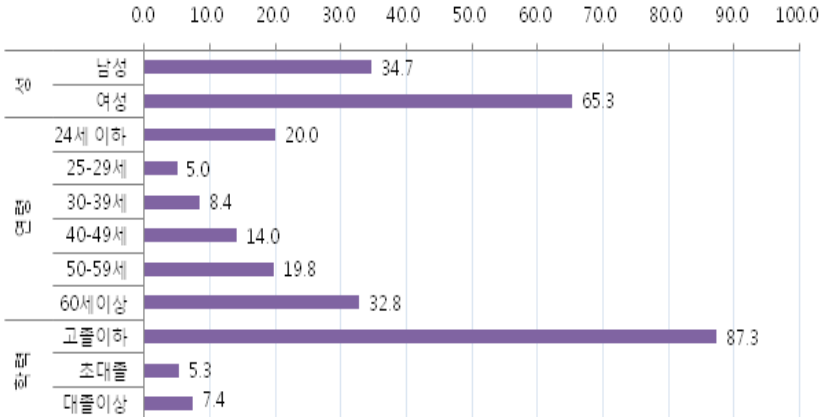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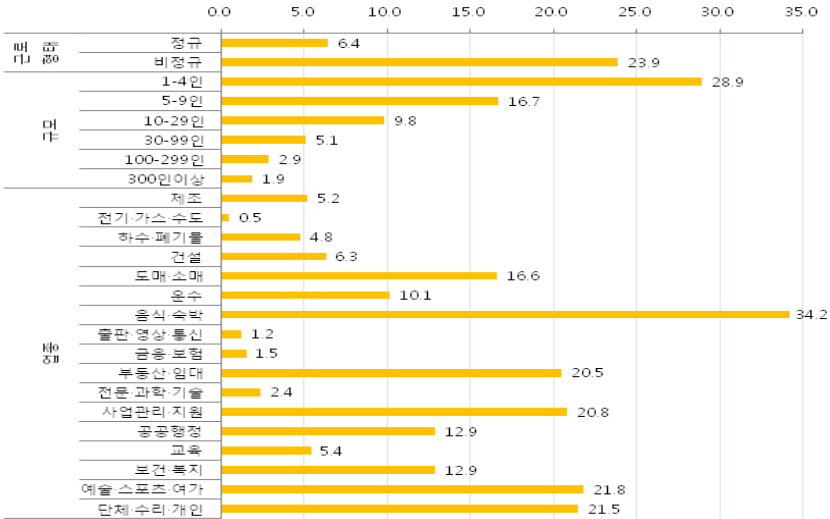
(그림 2-6) 인구 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분포(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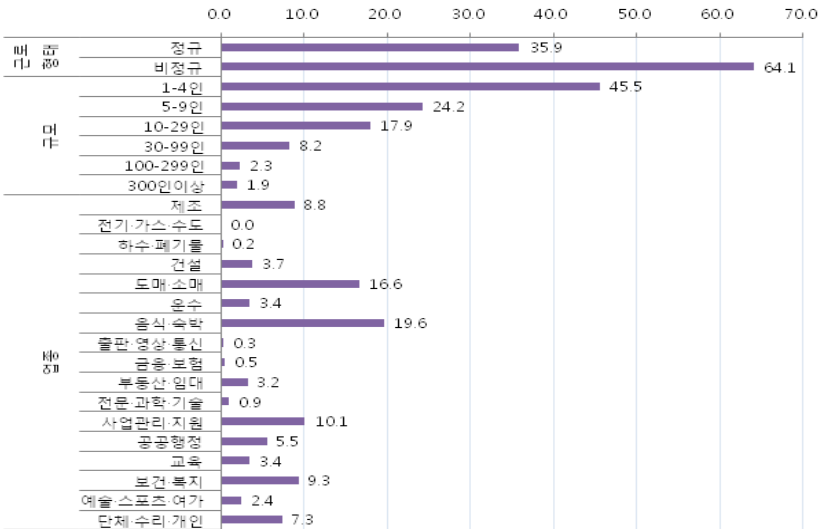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그림 2-7) 고용 현황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2014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그림 2-8) 고용 현황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분포(2014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 제 3 장

###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가구의 실태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노동시장 이중화를 경험하면서 주요 선진국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포함된 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간당 임금 계산과 가구 구분이 동시 가능한 한국노동패널(이하 KLIPS) 14~17차 조사(2011~14년) 자료를 이용한다.

#### 제1절 임금근로자의 분포

전체 임금근로자 중 7.32%가 최저임금의 95% 미만을, 3.00%가 최저임금의 95~105%를 받고 있다. 9.83%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저임금의 105~125%를 받고 있다.<sup>6)</sup>

각 연령대의 임금수준별 분포를 보면, 10대에서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

6) 이러한 KLIPS 14~17차의 결과는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에 비해 저임금근로자들의 비중이 조금 낮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저임금 수준의 비중이 50%를 넘고, 60대 이상에서도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비율이 40%에 이른다. 20대와 50대에서도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비중이 높지만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지 않다. 20대와 50대의 시간당 임금이 낮은 것은 주로 20대 초반과 50대 후반의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표 3-1〉 각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

(단위: %)

|        | 최저임금의<br>0~95%<br>(최저임금<br>미만) | 최저임금의<br>95~105%<br>(최저임금<br>수준) | 최저임금의<br>105~125%<br>(최저임금<br>영향권) | 최저임금의<br>125% 이상<br>(최저임금<br>초과) | 전체  |
|--------|--------------------------------|----------------------------------|------------------------------------|----------------------------------|-----|
| 전체     | 7.32                           | 3.00                             | 9.83                               | 79.85                            | 100 |
| 10대    | 41.69                          | 11.71                            | 20.23                              | 26.36                            | 100 |
| 20대    | 7.23                           | 2.42                             | 11.14                              | 79.22                            | 100 |
| 30대    | 2.05                           | 1.18                             | 5.24                               | 91.53                            | 100 |
| 40대    | 4.66                           | 2.64                             | 9.45                               | 83.25                            | 100 |
| 50대    | 8.19                           | 4.16                             | 13.00                              | 74.65                            | 100 |
| 60대 이상 | 31.84                          | 8.75                             | 16.36                              | 43.04                            | 100 |

자료: KLIPS 14~17차.

〈표 3-2〉 종사상 지위 또는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

(단위: %)

|       |     | 최저임금<br>미만 | 최저임금<br>수준 | 최저임금<br>영향권 | 최저임금<br>초과 | 전체  |
|-------|-----|------------|------------|-------------|------------|-----|
| 종사상지위 | 상용  | 3.56       | 1.70       | 6.90        | 87.84      | 100 |
|       | 임시  | 19.94      | 7.38       | 19.79       | 52.88      | 100 |
|       | 일용  | 14.89      | 5.65       | 15.52       | 63.93      | 100 |
| 근로형태  | 정규  | 3.22       | 1.29       | 6.38        | 89.10      | 100 |
|       | 비정규 | 15.32      | 6.35       | 16.57       | 61.77      | 100 |

자료: KLIPS 14~17차.

14 최저임금이 가게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종사상 지위별 임금분포를 보면,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비중이 매우 높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분포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일용직보다 임시직에서 저임금근로자가 더 많은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임금분포는 상용직과 비슷하고, 비정규직의 임금분포는 임시직과 일용직의 중간 정도 된다.

업종별 임금분포를 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사업관리·지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비율이 10%가 넘는다. 특히 고용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에서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근로자 비율이 30%를 넘는다.

〈표 3-3〉 업종별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

(단위: %)

|           | 최저임금<br>미만 | 최저임금<br>수준 | 최저임금<br>영향권 | 최저임금<br>초과 | 전체  |
|-----------|------------|------------|-------------|------------|-----|
| 제조        | 4.46       | 1.99       | 7.84        | 85.71      | 100 |
| 전기·가스·수도  | 3.22       | 0.00       | 0.67        | 96.11      | 100 |
| 하수·폐기물    | 2.09       | 0.00       | 5.65        | 92.26      | 100 |
| 건설        | 1.71       | 0.59       | 3.60        | 94.10      | 100 |
| 도매·소매     | 8.55       | 4.10       | 16.09       | 71.26      | 100 |
| 운수        | 4.93       | 2.33       | 7.39        | 85.35      | 100 |
| 음식·숙박     | 18.75      | 13.16      | 25.85       | 42.24      | 100 |
| 출판·영상·통신  | 1.88       | 1.25       | 2.84        | 94.02      | 100 |
| 금융·보험     | 1.49       | 0.91       | 3.30        | 94.30      | 100 |
| 부동산·임대    | 26.92      | 5.17       | 12.66       | 55.25      | 100 |
| 전문·과학·기술  | 0.89       | 0.11       | 2.89        | 96.11      | 100 |
| 사업관리·지원   | 12.26      | 6.57       | 13.60       | 67.57      | 100 |
| 공공행정      | 6.24       | 2.10       | 3.66        | 88.00      | 100 |
| 교육        | 3.83       | 1.13       | 7.40        | 87.64      | 100 |
| 보건·복지     | 7.61       | 3.14       | 14.01       | 75.24      | 100 |
| 예술·스포츠·여가 | 16.39      | 1.86       | 13.50       | 68.25      | 100 |
| 단체·수리·개인  | 15.31      | 4.05       | 15.15       | 65.49      | 100 |

자료: KLIPS 14~17차.

직종별로 보면,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판매직에서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비중이 높다.

〈표 3-4〉 직종별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

(단위: %)

|      | 최저임금<br>미만 | 최저임금<br>수준 | 최저임금<br>영향권 | 최저임금<br>초과 |
|------|------------|------------|-------------|------------|
| 관리   | 0.35       | 0.00       | 0.94        | 98.71      |
| 전문   | 2.50       | 0.79       | 4.80        | 91.90      |
| 사무   | 1.52       | 0.55       | 4.47        | 93.47      |
| 서비스  | 16.79      | 8.32       | 21.87       | 53.02      |
| 판매   | 9.80       | 5.29       | 17.68       | 67.23      |
| 농림어업 | 13.12      | 6.31       | 12.98       | 67.59      |
| 기능원  | 4.55       | 1.96       | 6.70        | 86.79      |
| 기계조작 | 3.78       | 1.89       | 8.47        | 85.86      |
| 단순노무 | 23.77      | 8.02       | 19.25       | 48.96      |

자료: KLIPS 14~17차.

## 제2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가구 구성

먼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가구 내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본격적으로 가구의 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가구 내에서 주요 소득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가구 내 지위별 근로자의 임금분포를 보면, 가구주가 다른 가구원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영향권에 약간 덜 분포되어 있고, 최저임금 초과에 약간 더 분포되어 있다. 배우자가 기타 가구원보다 저임금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가구 내 지위별로 임금분포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표 3-5〉 가구 내 지위별 근로자의 임금분포

(단위: %)

|        | 최저임금<br>미만 | 최저임금<br>수준 | 최저임금<br>영향권 | 최저임금<br>초과 | 합계  |
|--------|------------|------------|-------------|------------|-----|
| 가구주    | 5.59       | 2.08       | 5.90        | 86.43      | 100 |
| 배우자    | 10.39      | 5.09       | 17.87       | 66.65      | 100 |
| 기타 가구원 | 8.64       | 3.15       | 11.50       | 76.70      | 100 |
| 전 체    | 7.32       | 3.00       | 9.83        | 79.85      |     |

자료: KLIPS 14~17차.

〈표 3-6〉 임금수준별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 분포

(단위: %)

|        | 최저임금<br>미만 | 최저임금<br>수준 | 최저임금<br>영향권 | 최저임금<br>초과 | 전체    |
|--------|------------|------------|-------------|------------|-------|
| 가구주    | 43.61      | 39.51      | 34.30       | 61.83      | 57.12 |
| 배우자    | 34.08      | 40.66      | 43.63       | 20.04      | 24.00 |
| 기타 가구원 | 22.30      | 19.82      | 22.07       | 18.13      | 18.88 |
| 합 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자료: KLIPS 14~17차.

전체 임금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 분포를 보면, 가구주가 57.12%를, 배우자가 24.00%를 차지한다. 임금수준별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 분포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 중 가구 내에서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와 배우자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중 가구주와 배우자는 각각 43.61%, 34.08%를 차지하며, 기타 가구원은 22.30%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비율은 최저임금 미만보다 더 높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을 보조소득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가구주의 임금수준별 배우자의 경제적 상태를 살펴보자. 가구주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수준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각각 43.07%, 34.94%인 반면, 최저임금 초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가

구는 69.05%이다. 가구주가 최저임금 초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최저임금 미만이나 수준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가구주가 최저임금 초과인 가구에서 배우자가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무직인 비율 또한 높다. 특히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비율은 가구주가 최저임금 초과인 가구에서 29.61%로 최저임금 미만 가구의 13.05%에 비해 훨씬 높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에 배우자도 무직인 가구가 32.50%나 된다는 것이다.

〈표 3-7〉 가구주의 임금수준별 가구원 분포

(단위: %)

|             |                  |           | 가구주            |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비임금<br>근로 | 무직    |       |
|             |                  |           | 최저<br>임금<br>미만 | 최저<br>임금<br>수준 | 최저<br>임금<br>영향권 | 최저<br>임금<br>초과 |           |       |       |
| 배<br>우<br>자 | 유<br>배<br>우<br>자 | 임금근로      | 13.05          | 11.60          | 15.06           | 29.61          | 16.63     | 17.43 |       |
|             |                  | 비임금근로     | 2.82           | 1.89           | 3.49            | 5.60           | 30.81     | 4.96  |       |
|             |                  | 무직        | 27.20          | 21.45          | 19.03           | 33.84          | 29.20     | 32.50 |       |
|             |                  | 소계        | 43.07          | 34.94          | 37.58           | 69.05          | 76.63     | 54.89 |       |
|             | 무<br>배<br>우      | 비단독<br>세대 | 단독수입           | 14.34          | 21.08           | 17.82          | 9.49      | 2.96  | 4.89  |
|             |                  |           | 복수수입           | 6.99           | 5.98            | 8.50           | 2.44      | 8.42  | 11.93 |
|             |                  | 단독세대      | 35.60          | 38.00          | 36.10           | 19.03          | 11.99     | 28.29 |       |
| 합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자료: KLIPS 14~17차.

배우자가 있는 가구만 따로 뽑아서 가구주의 임금수준별 배우자 임금 분포를 보면, 가구주의 임금이 낮을 때 배우자가 무직이거나 저임금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가 최저임금 미만일 때 배우자가 무직인 가구는 63.16%이며 배우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가구는 8.53%이다. 이에 반해, 가구주가 최저임금 초과일 때 배우자가 무직인 가구는 49.00%이며 배우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가구는 3.35%이다.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가구주의 임금분포를 보면, 차이는 줄어들지만 가구주의 임금수준별 배우자 임금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배우자

18 최저임금이 가게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의 임금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임금이 낮거나 무직인 가구가 많고 가구주의 임금이 높은 가구가 줄어든다. 배우자가 무직인 가구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는 가구에 비해 가구주의 임금이 높은 비율이 높지 않으며 무직인 비율이 낮지 않다.

기타 가구원의 임금수준별 가구주 임금분포를 보면, 기타 가구원이 저

〈표 3-8〉 가구주의 임금수준별 배우자 임금분포

(단위: %)

|     |       |          | 가구주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비임금근로 | 무직    |
|     |       |          | 최저임금 미만 |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 영향권 | 최저임금 초과 |       |       |
| 배우자 | 임금근로  | 최저임금 미만  | 8.53    | 4.41    | 8.02     | 3.35    | 2.34  | 4.30  |
|     |       | 최저임금 수준  | 1.98    | 4.23    | 2.16     | 1.66    | 1.50  | 2.17  |
|     |       | 최저임금 영향권 | 7.55    | 7.58    | 9.98     | 7.43    | 4.89  | 4.79  |
|     |       | 최저임금 초과  | 12.23   | 16.99   | 19.91    | 30.44   | 12.96 | 20.50 |
|     | 비임금근로 |          | 6.55    | 5.40    | 9.29     | 8.11    | 40.21 | 9.03  |
|     | 무직    |          | 63.16   | 61.39   | 50.64    | 49.00   | 38.10 | 59.21 |
| 합계  |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자료: KLIPS 14~17차.

〈표 3-9〉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가구주 임금분포

(단위: %)

|     |       |          | 가구주     |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비임금근로 | 무직    | 합계  |
|     |       |          | 최저임금 미만 |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 영향권 | 최저임금 초과 |       |       |     |
| 배우자 | 임금근로  | 최저임금 미만  | 4.80    | 0.73    | 4.08     | 45.12   | 17.10 | 28.18 | 100 |
|     |       | 최저임금 수준  | 2.21    | 1.39    | 2.17     | 44.32   | 21.69 | 28.22 | 100 |
|     |       | 최저임금 영향권 | 2.39    | 0.71    | 2.85     | 56.37   | 20.04 | 17.65 | 100 |
|     |       | 최저임금 초과  | 1.04    | 0.43    | 1.53     | 62.26   | 14.33 | 20.40 | 100 |
|     | 비임금근로 |          | 0.78    | 0.19    | 1.00     | 23.23   | 62.23 | 12.57 | 100 |
|     | 무직    |          | 2.54    | 0.73    | 1.84     | 47.26   | 19.86 | 27.77 | 100 |

자료: KLIPS 14~17차.

임금근로자일 경우 가구주가 저임금근로자일 확률이 높으며, 기타 가구원이 무직일 경우 가구주가 고임금근로자일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표 3-10〉 기타 가구원의 임금수준별 가구주 임금분포

(단위: %)

|                       |                  |          | 가구주     |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비임금근로 | 무직    | 합계  |
|                       |                  |          | 최저임금 미만 |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 영향권 | 최저임금 초과 |       |       |     |
| 기<br>타<br>가<br>구<br>원 | 임<br>금<br>근<br>로 | 최저임금 미만  | 10.93   | 1.39    | 4.99     | 38.88   | 21.13 | 22.69 | 100 |
|                       |                  | 최저임금 수준  | 6.28    | 1.56    | 2.68     | 25.58   | 31.92 | 31.98 | 100 |
|                       |                  | 최저임금 영향권 | 5.21    | 1.32    | 8.65     | 33.61   | 24.60 | 26.61 | 100 |
|                       |                  | 최저임금 초과  | 3.23    | 1.24    | 3.31     | 34.30   | 27.43 | 30.50 | 100 |
|                       | 비임금근로            |          | 2.84    | 0.75    | 1.15     | 19.75   | 43.62 | 31.89 | 100 |
|                       | 무직               |          | 2.54    | 0.82    | 2.48     | 45.53   | 29.48 | 19.15 | 100 |

주: 한 가구에 기타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 각 기타 가구원에 동일한 가구주를 연결시켰음.  
 자료: KLIPS 14~17차.

### 제3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실태

먼저, 가구주의 임금수준별로 가구의 소득 및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표 3-11>에는 평균값과 중위값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가구의 매우 특이한 값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중위값을 위주로 살펴해보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주가 저임금근로자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도 저임금이거나 무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 전체의 노동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최저임금 초과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가구 전체의 노동소득도 크게 증가한다. 모든

가구에서 노동소득과 시장소득 사이에 차이는 크지 않다.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구주가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수준인 가구에서 총소득이 시장소득보다 20만 원 정도 많다. 통상적으로 소비는 소득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가구주가 최저임금 미만인 가구의 총지출은 105만 원으로 가구주가 최저임금 초과인 가구의 총지출 230만 원에 비해 훨씬 낮다. 가구주가 저임금인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가구주가 최저임금 초과인 가구보다 가구원 수가 적다. 지출을 소득에 맞춰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주가 최저임금 미만인 가구의 경우 노동소득이나 시장소득으로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으며, 가구주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가구의 경우 노동소득이나 시장소득이 지출보다 조금 더 많을 뿐이라는 사실은 가구주가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열악한 경제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이 최소한 2인이기 때

〈표 3-11〉 가구주의 임금수준별 가구의 소득 및 지출

(단위: 만 원)

|        |     | 최저임금<br>미만 | 최저임금<br>수준 | 최저임금<br>영향권 | 최저임금<br>초과 |
|--------|-----|------------|------------|-------------|------------|
| 가구주 월급 | 평균값 | 78.9       | 95.9       | 114.4       | 285.6      |
|        | 중위값 | 78.1       | 94.1       | 113.3       | 244.6      |
| 노동소득   | 평균값 | 151.4      | 162.7      | 181.6       | 375.3      |
|        | 중위값 | 100.0      | 130.0      | 140.0       | 330.0      |
| 시장소득   | 평균값 | 154.8      | 170.6      | 185.3       | 381.1      |
|        | 중위값 | 100.0      | 130.0      | 150.0       | 330.0      |
| 총소득    | 평균값 | 176.9      | 187.2      | 196.1       | 387.8      |
|        | 중위값 | 123.0      | 150.0      | 150.0       | 340.0      |
| 총지출    | 평균값 | 130.2      | 136.6      | 147.0       | 253.5      |
|        | 중위값 | 105.0      | 110.0      | 130.0       | 230.0      |
| 가구원 수  | 평균값 | 2.3        | 2.1        | 2.3         | 3.0        |
|        | 중위값 | 2.0        | 2.0        | 2.0         | 3.0        |

주: 1) 소득 및 지출은 2010년 물가를 기준으로 실질화한 값.

2) 시장소득은 임금소득과 비임금소득의 합.

자료: KLIPS 14~17차.



문에 가구소득, 가구지출, 가구원 수가 가구주 기준으로 제시된 값보다 높다. 모든 경우에서 가구주가 최저임금 초과이거나 비임금근로인 비율이 60%를 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임금소득보다 가구 전체의 노동소득이 훨씬 높다. 배우자의 임금소득과 가구의 노동소득 차이는 배우자의 임금이 높을수록 크다. 노동소득과 시장소득의 차이는 모든 경우에 크지 않으며,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시장소득과 총소득의 차이는 배우자가 저임금일 때 조금 더 높다. 배우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구의 총지출은 배우자가 최저임금 초과를 받는 가구의 3분의 2이다. 두 가구의 가구원 수는 4명으로 동일하다. 배우자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가구주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을 때보다는 소폭 개선되었다. 이는 가구주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가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았지만 배우자가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가구에서는 가구주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표 3-12〉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가구의 소득 및 지출

(단위: 만 원)

|       |     | 최저임금<br>미만 | 최저임금<br>수준 | 최저임금<br>영향권 | 최저임금<br>초과 |
|-------|-----|------------|------------|-------------|------------|
| 월급여   | 평균값 | 68.6       | 84.0       | 98.5        | 208.3      |
|       | 중위값 | 67.3       | 85.3       | 96.2        | 177.3      |
| 노동소득  | 평균값 | 275.3      | 318.0      | 348.1       | 489.2      |
|       | 중위값 | 250.0      | 300.0      | 330.0       | 450.0      |
| 시장소득  | 평균값 | 279.6      | 320.9      | 352.7       | 493.2      |
|       | 중위값 | 260.0      | 300.0      | 330.0       | 450.0      |
| 총소득   | 평균값 | 293.1      | 339.1      | 360.6       | 501.3      |
|       | 중위값 | 279.0      | 315.0      | 340.0       | 455.0      |
| 총지출   | 평균값 | 217.8      | 237.8      | 258.1       | 312.9      |
|       | 중위값 | 200.0      | 220.0      | 250.0       | 300.0      |
| 가구원 수 | 평균값 | 3.4        | 3.6        | 3.6         | 3.6        |
|       | 중위값 | 4.0        | 4.0        | 4.0         | 4.0        |

주: 1) 소득 및 지출은 2013년 물가를 기준으로 실질화한 값.

2) 시장소득은 임금소득과 비임금소득의 합.

자료: KLIPS 14~17차.

## 제4절 소 결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가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가구 내에서 주소득원인지 보조소득원인지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95%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43.61%가 가구주이고 34.08%가 배우자이며, 최저임금의 95~105%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가구주와 배우자의 비율도 이와 비슷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가구 내에서 보조소득원보다는 주소득원인 경우가 훨씬 많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가구주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일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의 추가적인 소득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가구주가 저임금을 받고 있는 가구일수록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거나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가구주가 고임금일 때보다 훨씬 많다. 이는 가구주가 저소득자일수록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가구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주가 최저임금의 95% 미만의 임금을 받는 가구들에서는 총 노동소득의 중위값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며, 그러한 가구들의 지출 중위값은 105만 원이다. 이러한 가구들은 이전소득 없이는 최소한의 지출도 충당하기 부족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가 저임금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고소득자일 확률은 훨씬 낮고 무직자일 확률은 더 높다. 이러한 가구에서는 가구주가 최저임금의 125%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50%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임금의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가구주가 무직일 확률도 거의 30%에 이르므로 배우자 임금을 무시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은 개인을 넘어 이제 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가구주와 배우자의 비중이 매우 높는데, 가구주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그 가구주의 소득에 거의 전적으로 기대고 있으며, 배우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가구의 30%는 가구주의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 제 4 장

###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최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의 화두로 제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하나의 방편으로서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비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나는지를 살펴본다.

#### 제1절 기존 연구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Aaronson et al.(2012)의 연구 결과가 거의 유일하다. 그들은 CEX (Consumer Expenditure Survey) 등을 패널화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소비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그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 여부를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최저임금 인상 전후 소비, 임금 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근로소득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영

향을 받는 성인 임금의 합이다. 성인은 가구주와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그들 각각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는 그들 각각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60~120%에 있는지 여부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의 임금이 모두 최저임금의 60~120%에 있지 않으면 그 가구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근로소득이 0이 되고, 가구주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50%이고 배우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60~120%에 있으면 배우자의 임금만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근로소득이 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근로소득을 가구의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Aaronson et al.(2012)은 그 기준으로 0 초과와 0.2 이상을 이용하였다.<sup>7)</sup>

<표 4-1> Aaronson et al.(2012)의 주요 연구 결과(1983~2008년)

| 최저임금 소득의 비중 |           |    | 0       |         | >0     |         | ≥0.2   |         |
|-------------|-----------|----|---------|---------|--------|---------|--------|---------|
|             |           |    | 추정치     | 표준 오차   | 추정치    | 표준 오차   | 추정치    | 표준 오차   |
| 소비 변화       | 총소비       |    | -57     | (150)   | 499    | (412)   | 815    | (457)   |
|             | 비내구재      |    | 21      | (78)    | 116    | (158)   | -60    | (188)   |
|             | 내구재       |    | -78     | (124)   | 383    | (369)   | 875    | (391)   |
| 자동차 소비 변화   | 신차 구매 변화  | 금액 | -37     | (92)    | 440    | (182)   | 511    | (212)   |
|             |           | 확률 | -0.003  | (0.004) | 0.024  | (0.009) | 0.027  | (0.010) |
|             | 중고차 구매 변화 | 금액 | 1       | (65)    | -107   | (196)   | 19     | (204)   |
|             |           | 확률 | 0.006   | (0.005) | -0.005 | (0.021) | 0.004  | (0.026) |
| 관측치 수       |           |    | 178,075 |         | 22,474 |         | 15,834 |         |

자료: Aaronson(2012), pp.3119-3121, Table 2~Table 4.

Aaronson et al.(2012)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에 대해 각각 최저임금 변화로 인한 소비 변화를 추정하였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7) Aaronson et al.은 기준으로 0.1 또는 0.3을 적용해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C_{it} = \sum_{k=-K}^K \phi_k w_{i,t+k}^m + w' x_{it} + f_i + u_{it} \quad (4-0)$$

여기서  $C_{it}$ 는 가구  $i$ 의  $t$ 기의 소비액,  $w_{i,t+k}^m$ 은 가구  $i$ 가 속한 주(州)의  $t+k$ 기의 최저임금,  $x_{it}$ 는 연도 더미변수 등의 기타 변수,  $f_i$ 는 가구  $i$ 의 고정효과이다. 이 식의 추정 결과, 그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 후에 소비의 증가가 거의 없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는 소비를 크게 증가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소비 증가는 주로 내구재 소비에서 일어났으며, 특히 일부 가구의 자동차 구매에서 발생했다.

## 제2절 자료 및 분석방법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Aaronson et al.(2012)과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주별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특징을 이용하였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대안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이용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Aaronson et al.(2012)과 같이 모든 가구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로 구분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비 변화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구의 소비 변화 차이를 추정한다. 기본적인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C_{ijt} = \alpha + \theta \cdot j + \zeta \cdot t + \beta \cdot j \cdot t + \gamma' x_{ijt} + \delta' z_{ij} + \epsilon_{ijt} \quad (4-1)$$

여기서  $i$ 는 개별 가구를 의미하고,  $j$ 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이면 1, 그렇지 않은 가구이면 0,  $t$ 는 최저임금 인상 전이면 0, 후이면 1이

다.  $\beta$ 는 최저임금이 가구의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추정계수이다.  $x_{ijt}$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가구  $i$ 의 특성 벡터이며,  $z_{ij}$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가구  $i$ 의 특성 벡터이다. 식 (4-1)을 시간에 대해 차분하면,

$$\Delta C_{ij} = \zeta + \beta d_j + \gamma' \Delta x_{ijt} + \Delta \epsilon_{ij} \quad (4-2)$$

이 되는데,  $d_j$ 는  $j$ 가 1이면 1이고,  $j$ 가 0이면 0이다.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4-2)을 추정하였는데, 필요한 정보는 KLIPS 13~16차에서 얻었다. 그런데 특정 2개 연도의 값을 이용하여 이용할 경우 관측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해의 값을 이용하였는데, 연속된 2년치 정보를 순차적으로 차분한 후 합친(pooling)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즉, 14차에서 13차 가구정보를 차분한 값과 15차에서 14차를 차분한 값에 16차에서 15차를 차분한 값을 합하였다. 그런데 KLIPS에 있는 가구소비 정보는 전년도의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한 데이터는 14~17차에 있는 소비를 13~16차에 있는 소득 등 다른 가구정보들과 결합한 4년치이다. 이렇게 여러 해의 차분한 값을 합하였기 때문에 경제상황 변화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식(4-2)를 변형한 다음 식을 최종적인 추정식으로 이용하였다.

$$\Delta C_{ij} = \psi d_t + \beta d_j + \gamma' \Delta x_{ij} + \Delta \epsilon_{ij} \quad (4-3)$$

여기서  $d_t$ 는 연도 더미변수 벡터이다.  $x_{ij}$ 는 가구특성 변수로 비시장소득, 근로가구원의 수, 가구원의 수 등을 포함한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Delta C_{ij}$ 는 소비의 자연대수의 변동이다.

관심집단(treatment group)과 비교집단(control group)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Aaronson et al.(2012)의 방법을 따랐다. 먼저, 성인의 임금 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을 합하여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총 임금을 구하였다. 성인이라 함은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최저임

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125% 이하인 임금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총임금을 가구의 총소득으로 나누어 그 값이 0.2 이상인지를 따져서, 이상이면 관심집단에 속하는 가구로, 미만이면 비교집단에 속하는 가구로 구분하였다.<sup>8)</sup> 그런데 두 집단의 이질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석대상 집단을 총소득이 전체 10분위 중 2~4분위에 속하고 근로소득이 0보다 큰 가구로 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한 가구의 수는 1,842개 가구이며, 관심집단에 속하는 가구 수는 716개, 비교집단에 속하는 가구 수는 1,128개이다. 두 집단의 소득과 소비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다. 소득과 소비 수준의 변화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두 집단 간에 소비 변동의 평균은 동일하다. 다만, 비교집단의 소득 증가가 관심집단에 비해 조금 더 컸을 뿐이다.

<표 4-2> 관심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소비 및 소득 비교

|           | 관심집단 (716개 가구) |       |      |       | 비교집단 (1,128개 가구) |       |      |       |
|-----------|----------------|-------|------|-------|------------------|-------|------|-------|
|           | 값              |       | 변동   |       | 값                |       | 변동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log(소비)   | 2.22           | 0.49  | 0.02 | 0.31  | 2.34             | 0.49  | 0.02 | 0.31  |
| log(근로소득) | 1.97           | 0.55  | 0.20 | 0.49  | 2.07             | 0.56  | 0.23 | 0.56  |
| log(총소득)  | 2.14           | 0.44  | 0.20 | 0.47  | 2.23             | 0.43  | 0.23 | 0.51  |

자료: KLIPS 13~16차.

### 제3절 추정 결과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식(4-2)를 추정하였다. 가구특성 변수로 어떤 변수를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네 가지 결과가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기초적인 분석모형인 모형 1에는

8) Aaronson et al.(2012)과 같이 집단 구분의 기준으로 0의 초과 여부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결과는 기준을 0.2 이상으로 할 때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가구 특성 변수로 근로자 수의 변화와 가구원 수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 수의 증가와 가구원 수의 증가는 모두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의 계수추정치가 예상되는데, 모형 1의 결과는 예상과 일치한다. 두 변수의 계수추정치는 5% 수준 및 1% 수준에서 유의하다. 다른 모형에서도 이 두 변수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모형 1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에 대한 계수추정치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유인한다면 유의한 양(+)의 값이 기대되지만 이러한 예상과 다른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모든 모형에서도 발견된다. 추정 결과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형 2와 모형 3에는 현재의 가구 규모에 따라 소비의 변화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구 규모를 통제하기 위하여 가구원 수와 총소득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두 변수의 계수추정치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이다. 모형 4에는 총소득뿐만 아니라 비임금소득의 변화도 추가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에도 비임금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를 유인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비임금소득 변화의 계수추정치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소득과 같은 가구의 비임금소득 증가가 가구의 악화된 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이전소득과 같은 비임금소득이 증가하지만 다른

<표 4-3> 최저임금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효과 추정 결과

|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모형 4               |
|------------|--------------------|--------------------|--------------------|--------------------|
| 최저임금 영향 가구 | -0.0041(0.0136)    | -0.0050(0.0137)    | -0.0050(0.0137)    | -0.0047(0.0137)    |
| 근로자 수 변화   | 0.0424** (0.0171)  | 0.0442* (0.0172)   | 0.0427** (0.0171)  | 0.0300(0.0187)     |
| 가구원 수 변화   | 0.0747*** (0.0195) | 0.0722*** (0.0197) | 0.0747*** (0.0195) | 0.0764*** (0.0195) |
| 가구원 수      |                    | -0.0053(0.0060)    |                    |                    |
| 총소득        |                    |                    | -0.0087(0.0154)    | -0.0100(0.0155)    |
| 비임금소득 변화   |                    |                    |                    | -0.0154* (0.0088)  |
| 연도더미       | ○                  | ○                  | ○                  | ○                  |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한편으로는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KLIPS 13~16차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2010~13년 고유의 현상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으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가구소비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관심집단과 비교집단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기간별 임금수준 변화를 보면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관심집단에 속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다음 기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4분의 1만이 다음 기에도 최저임금 미만에 머물러 있는 것과 대조된다.

〈표 4-4〉 전기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의 당기 임금수준별 분포

(단위: %)

|        |                  |          | 당 기            |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비임금<br>근로 | 비<br>취<br>업 | 전<br>체 |
|        |                  |          | 최저<br>임금<br>미만 | 최저<br>임금<br>수준 | 최저<br>임금<br>영향권 | 최저<br>임금<br>초과 |           |             |        |
| 전<br>기 | 관<br>심<br>집<br>단 | 최저임금 미만  | 53.6           | 10.8           | 16.7            | 8.4            | 1.8       | 8.6         | 100    |
|        |                  | 최저임금 수준  | 26.1           | 18.3           | 26.1            | 19.7           | 3.5       | 6.3         | 100    |
|        |                  | 최저임금 영향권 | 18.7           | 12.3           | 35.6            | 26.7           | 0.3       | 6.4         | 100    |
|        |                  | 최저임금 초과  | 8.2            | 6.8            | 16.8            | 49.1           | 1.8       | 17.3        | 100    |
|        | 비<br>교<br>집<br>단 | 최저임금 미만  | 24.3           | 5.7            | 12.9            | 22.9           | 7.1       | 27.1        | 100    |
|        |                  | 최저임금 수준  | 0.0            | 9.4            | 21.9            | 31.3           | 18.8      | 18.8        | 100    |
|        |                  | 최저임금 영향권 | 8.9            | 5.6            | 16.7            | 48.9           | 2.2       | 17.8        | 100    |
|        |                  | 최저임금 초과  | 2.6            | 1.8            | 7.3             | 77.5           | 4.3       | 6.4         | 100    |

자료: KLIPS 13~16차.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총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총소득에 유의하지 않은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총소득에 미치는 효과

|            | 모형 1               | 모형 2               |
|------------|--------------------|--------------------|
| 최저임금 영향 가구 | -0.0149 (0.0180)   | -0.0977(0.0209)*** |
| 근로자 수 변화   | 0.2975*** (0.0225) | 0.3064*** (0.0227) |
| 근로자 수      |                    | 0.1571*** (0.0189) |
| 연도더미 변수    | ○                  | ○                  |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4-6〉 최저임금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효과 추정 결과(2001~2004년)

|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모형 4                |
|------------|-----------------|-----------------|-----------------|---------------------|
| 최저임금 영향 가구 | 0.0941*(0.0530) | 0.899*(0.0530)  | 0.0984*(0.0536) | 0.0883*(0.0534)     |
| 근로자 수 변화   | 0.0364(0.0238)  | 0.0326(0.0239)  | 0.0359(0.0238)  | 0.0028(0.0252)      |
| 가구원 수 변화   | -0.0375(0.0342) | -0.0297(0.0347) | -0.0362(0.0343) | -0.0318(0.0342)     |
| 가구원 수      |                 | 0.0140(0.0098)  |                 |                     |
| 총소득        |                 |                 | 0.0202(0.0299)  | 0.0167(0.0298)      |
| 비임금소득 변화   |                 |                 |                 | -0.0496*** (0.0144) |
| 연도더미       | ○               | ○               | ○               | ○                   |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자료: KLIPS 4~7차.

최저임금이 가구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은 이유가 높은 최저임금 미준수율로 인해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낮은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를 증가시키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10%대인 최근과 달리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4~5%대에 머물렀던 2000년대 초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소비 증가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1

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10% 수준) 가구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가지 모형의 결과는 일관된다. 비임금소득 증가가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4절 소 결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정책도구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 증가가 필수적이다. 본 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였다.

KLIPS 13~16차(2000~13년)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를 증가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Aaronson et al.(2012)의 방법을 따랐다.

추정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는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가구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2000~13년 동안 평균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10%대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가구의 소득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수 있다. 소득변화를 추정해 본 결과, 실제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득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임금변화를 살펴보다도, 최저임금의 95% 미만을 받던 근로자의 50%는 다음 해에도 계속 최저임금의 95% 미만을 받고 있었다.

최저임금 미준수가 문제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최저임금 미준수가 문제라면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낮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4~5%대인 KLIPS 4~7차(2001~04년)를 이용한 분석에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낮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미준수율이 낮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가 다른 것이 미준수율의 차이 때문인지, 분석기간의 차이 때문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준수율이 높은 기간을 대상으로 미준수율을 제거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미준수율이 낮은 기간의 분석과 같은 결론이 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시기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향후의 연구 주제로 남긴다.

## 제 5 장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영세사업자들의 경영사정 악화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사정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영국 저임금위원회는 기업의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도입 또는 인상이 이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10인 미만 사업체에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규모 사업체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영국 저임금위원회에서 발행한 보고서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규모를 계산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체의 부담 증가는 그 사업체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특정 업종 및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몇 개 업종의 사업체를 규모별로 구분하여 사업체의 부담 증가 정도를 측정한다. 그런데 개별 사업체의 인건비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업종별 인건비 분포와 업종별 원가구조 정보를 결합하여 업종 및 규모별 인건비 부담 증가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 제1절 기존 연구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추측된다. 고용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여 부담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기업의 노력이나 근로자의 자발적 노력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도 있다(Schmitt, 2013). 이러한 대응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이윤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용조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이 이루어졌으며, 가격 인상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업이 떠안는 부담, 즉 이윤의 축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이윤 축소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영국의 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발행된 주요 보고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지금까지 주요 저널에 발표된 유일한 논문은 Draca et al.(2011)이다. 이 논문은 원래 영국 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Draca et al., 2005)를 나중에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FAME (Financial Analysis Made Easy)를 이용하여 영국의 1999년 4월 1일 국가 최저임금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이윤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전통적인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였다.

$$\left(\frac{\Pi}{S}\right)_{ijt} = \alpha + \delta' y_t + \beta \cdot j \cdot (I(t > yr_{\min}) \cdot j) + \theta' Z_{ijt} + \epsilon_{ijt} \quad (5-1)$$

여기서  $\Pi$ 는 이윤이고,  $S$ 는 매출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이윤율(profit margin)이다.  $y_t$ 는 연도더미 변수이고,  $Z_{ijt}$ 는 기업의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I(t > yr_{\min})$ 는  $t$ 가 최저임금 도입 이전이면 0이고 이후면 1이다.

그러나 1999년에 도입된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관심집단과 비교집단을 정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1999

년 3월 31일 결산일 회계정보에 있는 1인당 연평균 급여 12,000파운드를 기준으로 그 미만인 기업을 관심집단으로, 그 이상인 기업을 비교집단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구분이 적절한지 점검하였다.

그들은 1999년 3월 31일 이전 3년과 1999년 4월 1일 이후 3년간 관심집단과 비교집단의 이윤율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이윤을 줄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이윤율을 0.029 줄였으며, 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하다.

Draca et al.(2005) 이후에도 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여러 차례 더 발표하였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Riley & Bondibene(2015)는 다양한 시기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인상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FAME와 ARD(Annual Respondents Database)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세 번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관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12,000파운드뿐만 아니라 10,000파운드, 14,000파운드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Draca et al.(2011)과 거의 동일하다. 분석 결과, 그들은 Draca et al.(2011)의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의 상이한 반응에 연유한 것이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기업의 이윤이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FAME를 이용한 분석 결과만 간단히 소개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Riley & Bondibene(2015)의 주요 결과

| 분석 시기<br>(전/후)           | OLS Regression      |                   |                   | Robust Regression   |                   |                   |
|--------------------------|---------------------|-------------------|-------------------|---------------------|-------------------|-------------------|
|                          | £10,000             | £12,000           | £14,000           | £10,000             | £12,000           | £14,000           |
| 1996~1998 /<br>1999~2002 | 0.000<br>(0.004)    | 0.000<br>(0.003)  | 0.001<br>(0.003)  | 0.000<br>(0.002)    | 0.001<br>(0.002)  | 0.001<br>(0.002)  |
| 2000~2002 /<br>2003~2006 | -0.003<br>(0.005)   | -0.004<br>(0.004) | -0.004<br>(0.003) | 0.000<br>(0.003)    | -0.002<br>(0.002) | 0.000<br>(0.002)  |
| 2006~2008 /<br>2009~2012 | -0.010**<br>(0.004) | -0.005<br>(0.003) | -0.003<br>(0.003) | -0.008**<br>(0.003) | -0.003<br>(0.002) | -0.002<br>(0.002) |

자료 : Riley & Bondibene(2015), pp.41-42, Table 1~Table 3.

## 제2절 자료 및 분석방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는 영국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이윤 변화를 추정하기 쉽지 않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체이고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회계정보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그 대안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정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없더라도 경제 또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인건비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도입될 경우 인건비 인상분 중에 얼마만큼이 최저임금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발생했을 인상분이고, 얼마만큼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없을 때 근로자의 임금분포 및 기업의 원가구조가 일정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충격이 주어지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최저임금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이 없다면 임금분포 및 원가구조가 2013년의 것과 같다고 가정한다. 즉, 최저임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금인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임금분포와 원가구조는 2013년의 것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의 효과를 살핀다면 이러한 가정이 문제이겠지만 짧은 미래에 발생할 최저임금의 효과를 알아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 판단된다.

먼저 2013년 근로자의 임금분포와 사업체의 원가구조를 살펴보자. 판매 및 일반관리비 중에 인건비 비중 변화로 사업체 부담의 증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구조에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인건비 항목만을 따로 뽑아낸다. 그런데 분석에 앞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데,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위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부담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 증가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2013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가한다. 충격이 가해지고 기업이 이를 지킨다면 근로자의 임금분포는 변하게 된다. 이는 인건비의 인상을 의미하고 사업체의 원가구조 변화로 이어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업종 및 규모별 부담 증가의 평균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각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업종 및 규모별로 합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업종 및 규모별 인건비 증가율은 업종 및 규모별 원가구조에 영향을 주어 업종 및 규모별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비 인건비 비중이 변하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최저임금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임금인상에 강제적으로 추가되는 인상분만큼만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라는 것이다. 즉, 4%의 충격이라 함은 (최저임금이 없을 때 임금인상률 + 4%)의 최저임금 인상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으로 0~10%를 고려한다. 즉, (최저임금이 없을 때 임금인상률 + 0~10%)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없을 때 임금인상률보다 낮거나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를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최저임금이 없을 때 임금인상률보다 10% 더 인상되는 것은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업종별 분포,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사업관리·지원서비스업, 교육업, 보건복지업, 예술·스포츠·오락서비스업,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 등 8개 업종을 분석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였다. 이 8개 업종에는 전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67.2%가 종사하고 있다. 이 업종들에 대해 4인 이하,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등 6개 규모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업종 및 규모별 근로자의 임금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2013년)를 이용하였다. 업종 및 규모별 사업체의 원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업조사」(2013년)와 「서비스업조사」(2013년)를 이용하였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도소

매업조사』를,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서비스업조사』를 이용하였다.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와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인건비를 합한 값이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의 계산에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이용하였지만,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매출원가의 합을 이용하였다. 도소매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에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대한 정보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서 제시된 값은 원가 부담 증가의 업종별 평균이라는 것이다. 한 업종에 모든 사업체의 원가 부담 증가가 업종 평균에 몰려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분산된 정도에 따라 많은 사업체들이 업종 평균보다 훨씬 높은 원가 부담 증가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 제3절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부담 증감

#### 1. 근로자의 임금분포 및 사업체의 원가구조

최저임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저임금근로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이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업종 및 규모별로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의 비중을 살펴본다. 대체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 및 규모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4인 이하 사업체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30%를 웃돈다. 교육서비스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만 예외적으로 10%대이다. 대체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지며, 특히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낮다. 그러나 음식·숙박업과 사업관리·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업에서는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에 큰 차이가 없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과 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표 5-2〉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2013년)  
(단위: %)

|           | 4인<br>이하 | 5~<br>9인 | 10~<br>29인 | 30~<br>99인 | 100~<br>299인 | 300인<br>이상 |
|-----------|----------|----------|------------|------------|--------------|------------|
| 도·소매      | 30.6     | 12.1     | 6.9        | 4.9        | 3.5          | 5.8        |
| 음식·숙박     | 38.7     | 36.8     | 25.4       | 19.7       | 14.8         | 9.5        |
| 부동산·임대    | 29.6     | 17.8     | 18.4       | 3.8        | 22.8         |            |
| 사업관리·지원   | 34.5     | 29.8     | 18.6       | 9.0        | 4.4          | 2.2        |
| 교육        | 15.8     | 10.4     | 3.8        | 2.6        | 3.2          | 6.7        |
| 보건·복지     | 17.1     | 14.1     | 16.2       | 16.0       | 4.7          |            |
| 예술·스포츠·여가 | 49.2     | 8.0      | 11.9       | 8.9        | 2.9          | 20.8       |
| 단체·수리·개인  | 30.1     | 18.7     | 15.6       | 4.4        | 3.8          | 18.9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비 인건비<sup>9)</sup>의 비중 변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현재’의 인건비 비중이다. 현재 인건비 비중이 높으면 낮은 임금인상률에도 큰 인건비 비중 증가를 경험할 것이다. 한편 업종별로 인건비 비중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음식숙박업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의 인건비 비중은 낮지만, 도소매업, 사업관리·지원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업 등의 인건비 비중은 높다.<sup>10)</sup> 같은 업종에서도 규모에 따라 인건비 비중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도소매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지만, 사업관리·지원서비스업이나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높아진다. 대분류 업종 내에서도 업종(중분류)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지만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는 대규모 사업

9) 엄격히 말하면, 여기서 사용한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인건비 합이다.

10) 다른 업종의 인건비 비중은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매출 원가 중 인건비 비중으로 계산되었지만,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비중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도소매업의 인건비 비중을 다른 업종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표 5-3〉 업종 및 규모별 인건비 비중(2013년)

|               | 4인<br>이하 | 5~<br>9인 | 10~<br>29인 | 30~<br>99인 | 100~<br>299인 | 300인<br>이상 |
|---------------|----------|----------|------------|------------|--------------|------------|
| 도매·소매         | 36.91    | 40.40    | 38.60      | 32.59      | 25.09        | 17.62      |
| 자동차·부품 판매     | 42.10    | 49.42    | 45.09      | 35.19      | 28.61        |            |
| 도매·상품중개       | 41.71    | 43.53    | 39.43      | 35.70      | 24.74        | 17.11      |
| 소매            | 32.92    | 34.31    | 31.97      | 25.40      | 25.21        | 18.06      |
| 음식·숙박         | 21.30    | 25.02    | 27.14      | 27.81      | 29.07        | 21.44      |
| 숙박            | 25.13    | 34.57    | 34.07      | 29.81      | 30.02        | 20.98      |
| 음식점·주점        | 21.14    | 24.68    | 26.54      | 27.22      | 26.63        | 31.53      |
| 부동산·임대        | 19.02    | 23.36    | 26.29      | 18.48      | 8.64         | 5.60       |
| 부동산           | 19.15    | 23.26    | 28.02      | 18.52      | 8.51         | 5.60       |
| 임대            | 18.39    | 24.23    | 17.03      | 18.19      | 12.20        |            |
| 사업관리·지원       | 36.87    | 33.97    | 41.02      | 48.63      | 62.02        | 76.19      |
| 사업시설관리·조경     | 38.70    | 37.91    | 55.25      | 56.82      | 59.86        | 73.13      |
| 사업지원 서비스      | 36.55    | 32.91    | 37.77      | 46.71      | 62.76        | 76.91      |
| 교육            | 42.86    | 50.54    | 40.99      | 34.50      | 30.73        | 23.69      |
| 보건·복지         | 36.01    | 46.70    | 49.38      | 52.08      | 48.67        | 45.59      |
| 보건            | 30.47    | 36.38    | 37.78      | 47.53      | 48.40        | 45.50      |
| 사회복지          | 59.00    | 65.29    | 62.24      | 65.39      | 51.34        | 75.62      |
| 예술·스포츠·여가     | 29.72    | 35.35    | 14.26      | 26.19      | 19.27        | 20.31      |
| 창작·예술·여가관련서비스 | 33.26    | 38.13    | 43.52      | 48.42      | 40.08        | 57.63      |
| 스포츠·오락관련서비스   | 28.87    | 33.88    | 8.93       | 19.03      | 17.12        | 18.20      |
| 단체·수리·개인      | 28.63    | 30.83    | 38.24      | 37.06      | 36.35        | 28.62      |
| 수리            | 21.27    | 27.46    | 38.02      | 36.17      | 36.10        | 28.86      |
| 기타 개인서비스      | 38.11    | 37.22    | 38.66      | 38.70      | 37.06        | 22.38      |

자료: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체에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제 업종별로 최저임금 충격으로 인한 인건비 비중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최저임금 충격 시나리오로 0~10%를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4~6% 충격 시나리오라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의 최대치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6% 충격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sup>11)</sup> 그리고 기업 부담 증가 정도를 계산하는 주요 이유가 영세사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4인 이하 사업체에 미칠 영향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 2. 6% 최저임금 충격 시 인건비 비중 변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저임금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다. 6% 최저임금 충격이 올 경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4인 이하 사업체의 인건비 비중은 0.32%p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인건비 비중 변화는 거의 없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최저임금 충격으로 인한 인건비 비중 변화가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숙박업의 규모별 패턴은 도소매업과 비슷하다. 두 업종(대분류)에서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중분류), 즉 도소매업 중에서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중에서는 음식점·주점업에 영향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업종들의 경우 30~99인 규모의 사업체도 최저임금 충격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은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근로자 수가 그리 많은 업종은 아니다. 6% 최저임금 충격 시에 이 업종에 속한 4인 이하 사업체의 인건비 비중은 0.36%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업종에 속한 30인 이상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사업관리·지원서비스업은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로자 수도 매우 많으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업종에 속한 영세사업자(4인 이하 사업체)들은 0.65%p의 인건비 비중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종에서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영향의 정도는 줄어들지만, 100~299인 규모의 사업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모두에서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중분류)에서 영향이 더 크다.

11) 시나리오 전체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5-4〉 최저임금 6% 충격 시 인건비 비중 증가

(단위: %p)

|               | 4인<br>이하 | 5~<br>9인 | 10~<br>29인 | 30~<br>99인 | 100~<br>299인 | 300인<br>이상 |
|---------------|----------|----------|------------|------------|--------------|------------|
| 도매·소매         | 0.32     | 0.09     | 0.05       | 0.05       | 0.05         | 0.00       |
| 자동차·부품 판매     | 0.11     | 0.01     | 0.02       | 0.07       | 0.00         |            |
| 도매·상품중개       | 0.29     | 0.06     | 0.01       | 0.01       | 0.00         | 0.00       |
| 소매            | 0.34     | 0.15     | 0.11       | 0.10       | 0.08         | 0.00       |
| 음식·숙박         | 0.41     | 0.32     | 0.21       | 0.09       | 0.04         | 0.01       |
| 숙박            | 0.31     | 0.71     | 0.25       | 0.02       | 0.07         | 0.02       |
| 음식점·주점        | 0.41     | 0.32     | 0.20       | 0.18       | 0.00         | 0.00       |
| 부동산·임대        | 0.36     | 0.23     | 0.23       | 0.05       | 0.00         | 0.03       |
| 부동산           | 0.37     | 0.26     | 0.27       | 0.06       | 0.00         | 0.03       |
| 임대            | 0.17     | 0.07     | 0.07       | 0.00       | 0.00         |            |
| 사업관리·지원       | 0.65     | 0.40     | 0.28       | 0.19       | 0.15         | 0.03       |
| 사업시설관리·조경     | 0.46     | 0.42     | 0.22       | 0.10       | 0.12         | 0.11       |
| 사업지원 서비스      | 0.68     | 0.39     | 0.28       | 0.20       | 0.16         | 0.00       |
| 교육            | 0.16     | 0.13     | 0.03       | 0.01       | 0.01         | 0.01       |
| 보건·복지         | 0.13     | 0.09     | 0.15       | 0.11       | 0.03         | 0.00       |
| 보건            | 0.08     | 0.05     | 0.06       | 0.06       | 0.02         | 0.00       |
| 사회복지          | 0.33     | 0.17     | 0.24       | 0.24       | 0.11         | 2.62       |
| 예술·스포츠·여가     | 0.67     | 0.42     | 0.03       | 0.06       | 0.00         | 0.08       |
| 창작·예술·여가관련서비스 | 0.68     | 0.23     | 0.10       | 0.07       | 0.00         | 0.00       |
| 스포츠·오락관련서비스   | 0.66     | 0.50     | 0.02       | 0.05       | 0.00         | 0.09       |
| 단체·수리·개인      | 0.33     | 0.15     | 0.17       | 0.03       | 0.00         | 0.00       |
| 수리            | 0.07     | 0.01     | 0.04       | 0.00       | 0.00         | 0.00       |
| 기타 개인서비스      | 0.70     | 0.44     | 0.38       | 0.17       | 0.00         | 0.00       |

교육서비스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 모두 최저임금 충격으로 인한 인건비 비중 증가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최저임금 충격에 대해 교육서비스업에 속한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비중은 0.16%p

증가하고,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속한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비중은 0.13%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그 영향이 30~99인 규모의 사업체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충격에 대한 영향이 보건서비스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이에 상당히 다르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영향이 상당하고 거의 전 규모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에 속한 영세사업체는 6% 최저임금 충격에 0.67%의 인건비 비중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10인 이상 사업체는 영향이 거의 없다. 세부 업종(중분류) 사이도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는 세부 업종(중분류)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6% 최저임금 충격이 수리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0.07%p이며, 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는 거의 영향이 없지만,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에는 그 영향이 상당하다. 영세사업체의 인건비 비중은 0.70%p 오르고 30~99인 규모의 사업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4절 기타 고려사항 : 최저임금 미준수 해소 시의 인건비 비중 증가

앞 절에서 제시된 인건비 비중 증가는 모든 근로자들이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값이다. 최저임금 미준수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비중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여기서는 최저임금 미준수를 해소할 때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인건비 비중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표 5-5〉 현재 최저임금 준수 시 증가할 인건비 비중 증가(2013년)

(단위: %p)

|               | 4인<br>이하 | 5~<br>9인 | 10~<br>29인 | 30~<br>99인 | 100~<br>299인 | 300인<br>이상 |
|---------------|----------|----------|------------|------------|--------------|------------|
| 도매·소매         | 1.46     | 0.31     | 0.15       | 0.16       | 0.16         | 0.00       |
| 자동차·부품 판매     | 0.62     | 0.00     | 0.02       | 0.02       | 0.00         |            |
| 도매·상품중개       | 2.49     | 0.30     | 0.03       | 0.03       | 0.00         | 0.00       |
| 소매            | 0.87     | 0.38     | 0.35       | 0.38       | 0.26         | 0.00       |
| 음식·숙박         | 1.08     | 0.69     | 0.52       | 0.21       | 0.08         | 0.01       |
| 숙박            | 0.56     | 1.46     | 0.43       | 0.02       | 0.12         | 0.02       |
| 음식점·주점        | 1.09     | 0.67     | 0.52       | 0.41       | 0.00         | 0.00       |
| 부동산·임대        | 1.63     | 0.83     | 0.71       | 0.22       | 0.00         | 0.10       |
| 부동산           | 1.65     | 0.94     | 0.88       | 0.27       | 0.00         | 0.10       |
| 임대            | 1.45     | 0.01     | 0.12       | 0.00       | 0.00         |            |
| 사업관리·지원       | 1.84     | 1.10     | 0.73       | 0.36       | 0.50         | 0.08       |
| 사업시설관리·조경     | 0.90     | 0.75     | 0.62       | 0.04       | 0.60         | 0.33       |
| 사업지원 서비스      | 1.97     | 1.12     | 0.71       | 0.40       | 0.46         | 0.00       |
| 교육            | 0.33     | 0.46     | 0.06       | 0.02       | 0.03         | 0.05       |
| 보건·복지         | 0.35     | 0.14     | 0.42       | 0.26       | 0.04         | 0.01       |
| 보건            | 0.20     | 0.05     | 0.10       | 0.17       | 0.03         | 0.01       |
| 사회복지          | 0.83     | 0.29     | 0.77       | 0.54       | 0.15         | 0.00       |
| 예술·스포츠·여가     | 1.67     | 0.97     | 0.09       | 0.03       | 0.00         | 0.36       |
| 창작·예술·여가관련서비스 | 2.37     | 0.02     | 0.33       | 0.04       | 0.00         | 0.00       |
| 스포츠·오락관련서비스   | 1.56     | 1.38     | 0.04       | 0.03       | 0.00         | 0.43       |
| 단체·수리·개인      | 1.45     | 0.15     | 0.46       | 0.14       | 0.00         | 0.00       |
| 수리            | 0.28     | 0.04     | 0.11       | 0.00       | 0.00         | 0.00       |
| 기타 개인서비스      | 3.10     | 0.38     | 0.97       | 0.78       | 0.00         | 0.00       |

대체로 영세사업체의 부담은 상당하지만 더 큰 규모의 사업체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고용규모가 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영세사업체의 인건비 비중 증가가 1%p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상품중개업



에서 영세사업체의 부담이 크고, 고용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의 경우 규모가 큰 사업체도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 업종들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도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관리·지원서비스업에서 영세사업체의 인건비 비중 증가가 2%p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 비중이 높은 부동산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영세사업체의 부담이 매우 크고, 이 업종에서 규모가 큰 사업체도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교육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영세사업체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영세사업체의 인건비 비중 증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업의 평균인 0.35%p보다 훨씬 크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과 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 영세사업체의 부담은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보다 높지 않지만 상당히 클 것이다. 특히, 두 업종(대분류)에 속한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와 기타 개인서비스에서 영세사업체의 부담은 매우 크다. 기타 개인서비스에서 영세사업체의 인건비 비중은 3.10%p 증가할 것이다. 이 업종의 경우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체의 부담도 상당할 것이다.

## 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 정확히는 업종 및 규모별 사업체의 부담 증가이다. 분석 대상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8개 업종(대분류)이며 이 업종들을 6개의 규모로 구분하였다. 같은 대분류 업종 내에서도 사업 특성의 이질성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어서 중분류 수준의 분석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부담 증가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로 측정하였다.

6%의 최저임금 충격, 즉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6% 더 높을 때, 영세사업자(4인 이하 사업체)의 인건비 비중 상승은 0.1%p에서 0.7%p 사이에 있다. 고용규모가 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비중은 0.3~0.4%p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최근 그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에서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비중은 0.6%p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영세사업자 부담은 0.13%p만 증가하지만, 업종 내에서 이 질성이 커서 복지서비스업의 경우 0.33%p 증가한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에 속한 영세사업체의 부담 증가는 매우 커서 0.6%p가 넘을 것이다. 6%p의 최저임금 충격은 현실과 대비해서 매우 큰 충격인데, 이러한 충격에도 사업체의 부담 증가의 평균은 0.5%p 내외로 아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제시된 값은 업종 및 규모의 부담 증가의 평균이라는 것이다. 어떤 업종 및 규모에 속한 모든 사업체의 부담 증가가 그 업종 및 규모의 부담 증가 평균과 일치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부담 증가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사업체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업의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미준수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 증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최저임금 충격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를 계산할 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최저임금 미준수라는 위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의 부담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미준수율을 낮추지 않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준수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영세사업자가 최저임금 미준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2%p의 인건비 비중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서비스업이나 보건·복지서비스업과 같이 1%p보다 낮은 업종도 있지만, 도매·상품중개업이나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p가 넘는다. 영세사업자들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1~2%p의 인건비 비중 증가의 충격이 한 번에 주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사업체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부표 5-1〉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인건비 비중 증가

(단위: %p)

|           | 최저임금<br>충격 | 4인<br>이하 | 5~<br>9인 | 10~<br>29인 | 30~<br>99인 | 100~<br>299인 | 300인<br>이상 |
|-----------|------------|----------|----------|------------|------------|--------------|------------|
| 도·소매      | 2% 충격      | 0.10     | 0.03     | 0.02       | 0.01       | 0.02         | 0.00       |
|           | 4% 충격      | 0.21     | 0.06     | 0.03       | 0.03       | 0.03         | 0.00       |
|           | 6% 충격      | 0.32     | 0.09     | 0.05       | 0.05       | 0.05         | 0.00       |
|           | 10% 충격     | 0.57     | 0.17     | 0.09       | 0.09       | 0.08         | 0.00       |
| 자동차·부품 판매 | 2% 충격      | 0.04     | 0.00     | 0.01       | 0.02       | 0.00         |            |
|           | 4% 충격      | 0.07     | 0.00     | 0.01       | 0.05       | 0.00         |            |
|           | 6% 충격      | 0.11     | 0.01     | 0.02       | 0.07       | 0.00         |            |
|           | 10% 충격     | 0.19     | 0.04     | 0.04       | 0.12       | 0.00         |            |
| 도매·상품중개   | 2% 충격      | 0.09     | 0.02     | 0.00       | 0.00       | 0.00         | 0.00       |
|           | 4% 충격      | 0.19     | 0.04     | 0.01       | 0.01       | 0.00         | 0.00       |
|           | 6% 충격      | 0.29     | 0.06     | 0.01       | 0.01       | 0.00         | 0.00       |
|           | 10% 충격     | 0.49     | 0.11     | 0.02       | 0.02       | 0.00         | 0.00       |
| 소매        | 2% 충격      | 0.11     | 0.05     | 0.03       | 0.03       | 0.02         | 0.00       |
|           | 4% 충격      | 0.22     | 0.10     | 0.07       | 0.06       | 0.05         | 0.00       |
|           | 6% 충격      | 0.34     | 0.15     | 0.11       | 0.10       | 0.08         | 0.00       |
|           | 10% 충격     | 0.61     | 0.29     | 0.20       | 0.18       | 0.13         | 0.00       |
| 음식·숙박     | 2% 충격      | 0.13     | 0.10     | 0.06       | 0.03       | 0.01         | 0.00       |
|           | 4% 충격      | 0.26     | 0.21     | 0.13       | 0.06       | 0.03         | 0.01       |
|           | 6% 충격      | 0.41     | 0.32     | 0.21       | 0.09       | 0.04         | 0.01       |
|           | 10% 충격     | 0.73     | 0.57     | 0.37       | 0.17       | 0.07         | 0.02       |
| 숙박        | 2% 충격      | 0.09     | 0.24     | 0.08       | 0.01       | 0.02         | 0.01       |
|           | 4% 충격      | 0.20     | 0.48     | 0.16       | 0.01       | 0.04         | 0.01       |
|           | 6% 충격      | 0.31     | 0.71     | 0.25       | 0.02       | 0.07         | 0.02       |
|           | 10% 충격     | 0.56     | 1.26     | 0.41       | 0.03       | 0.11         | 0.03       |
| 음식점·주점    | 2% 충격      | 0.13     | 0.10     | 0.06       | 0.06       | 0.00         | 0.00       |
|           | 4% 충격      | 0.26     | 0.21     | 0.13       | 0.12       | 0.00         | 0.00       |
|           | 6% 충격      | 0.41     | 0.32     | 0.20       | 0.18       | 0.00         | 0.00       |
|           | 10% 충격     | 0.73     | 0.56     | 0.37       | 0.31       | 0.00         | 0.00       |

〈부표 5-2〉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의 인건비 비중 증가

(단위 : %p)

|           | 최저임금<br>충격 | 4인<br>이하 | 5~<br>9인 | 10~<br>29인 | 30~<br>99인 | 100~<br>299인 | 300인<br>이상 |
|-----------|------------|----------|----------|------------|------------|--------------|------------|
| 부동산·임대    | 2% 충격      | 0.11     | 0.07     | 0.07       | 0.02       | 0.00         | 0.01       |
|           | 4% 충격      | 0.23     | 0.15     | 0.14       | 0.03       | 0.00         | 0.02       |
|           | 6% 충격      | 0.36     | 0.23     | 0.23       | 0.05       | 0.00         | 0.03       |
|           | 10% 충격     | 0.62     | 0.42     | 0.40       | 0.08       | 0.00         | 0.04       |
| 부동산       | 2% 충격      | 0.12     | 0.08     | 0.08       | 0.02       | 0.00         | 0.01       |
|           | 4% 충격      | 0.24     | 0.17     | 0.17       | 0.04       | 0.00         | 0.02       |
|           | 6% 충격      | 0.37     | 0.26     | 0.27       | 0.06       | 0.00         | 0.03       |
|           | 10% 충격     | 0.64     | 0.46     | 0.48       | 0.10       | 0.00         | 0.04       |
| 임대        | 2% 충격      | 0.06     | 0.01     | 0.02       | 0.00       | 0.00         |            |
|           | 4% 충격      | 0.11     | 0.04     | 0.04       | 0.00       | 0.00         |            |
|           | 6% 충격      | 0.17     | 0.07     | 0.07       | 0.00       | 0.00         |            |
|           | 10% 충격     | 0.29     | 0.13     | 0.11       | 0.00       | 0.00         |            |
| 사업관리·지원   | 2% 충격      | 0.21     | 0.13     | 0.09       | 0.06       | 0.05         | 0.01       |
|           | 4% 충격      | 0.42     | 0.26     | 0.19       | 0.12       | 0.10         | 0.02       |
|           | 6% 충격      | 0.65     | 0.40     | 0.28       | 0.19       | 0.15         | 0.03       |
|           | 10% 충격     | 1.12     | 0.70     | 0.49       | 0.33       | 0.25         | 0.05       |
| 사업시설관리·조경 | 2% 충격      | 0.11     | 0.13     | 0.07       | 0.03       | 0.04         | 0.04       |
|           | 4% 충격      | 0.27     | 0.27     | 0.15       | 0.07       | 0.08         | 0.07       |
|           | 6% 충격      | 0.46     | 0.42     | 0.22       | 0.10       | 0.12         | 0.11       |
|           | 10% 충격     | 0.85     | 0.74     | 0.38       | 0.19       | 0.20         | 0.18       |
| 사업지원서비스   | 2% 충격      | 0.22     | 0.12     | 0.09       | 0.06       | 0.05         | 0.00       |
|           | 4% 충격      | 0.45     | 0.25     | 0.18       | 0.13       | 0.11         | 0.00       |
|           | 6% 충격      | 0.68     | 0.39     | 0.28       | 0.20       | 0.16         | 0.00       |
|           | 10% 충격     | 1.16     | 0.68     | 0.48       | 0.35       | 0.27         | 0.01       |

〈부표 5-3〉 교육서비스업 및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인건비 비중 증가

(단위: %p)

|       | 최저임금<br>충격 | 4인<br>이하 | 5~<br>9인 | 10~<br>29인 | 30~<br>99인 | 100~<br>299인 | 300인<br>이상 |
|-------|------------|----------|----------|------------|------------|--------------|------------|
| 교육    | 2% 충격      | 0.05     | 0.04     | 0.01       | 0.00       | 0.00         | 0.00       |
|       | 4% 충격      | 0.10     | 0.08     | 0.02       | 0.01       | 0.00         | 0.01       |
|       | 6% 충격      | 0.16     | 0.13     | 0.03       | 0.01       | 0.01         | 0.01       |
|       | 10% 충격     | 0.27     | 0.22     | 0.06       | 0.02       | 0.01         | 0.02       |
| 보건·복지 | 2% 충격      | 0.04     | 0.03     | 0.05       | 0.03       | 0.01         | 0.00       |
|       | 4% 충격      | 0.09     | 0.06     | 0.10       | 0.07       | 0.02         | 0.00       |
|       | 6% 충격      | 0.13     | 0.09     | 0.15       | 0.11       | 0.03         | 0.00       |
|       | 10% 충격     | 0.24     | 0.17     | 0.26       | 0.19       | 0.05         | 0.01       |
| 보건    | 2% 충격      | 0.02     | 0.02     | 0.02       | 0.02       | 0.01         | 0.00       |
|       | 4% 충격      | 0.05     | 0.03     | 0.04       | 0.04       | 0.01         | 0.00       |
|       | 6% 충격      | 0.08     | 0.05     | 0.06       | 0.06       | 0.02         | 0.00       |
|       | 10% 충격     | 0.13     | 0.09     | 0.12       | 0.11       | 0.04         | 0.00       |
| 사회복지  | 2% 충격      | 0.11     | 0.05     | 0.08       | 0.08       | 0.04         | 0.00       |
|       | 4% 충격      | 0.22     | 0.11     | 0.16       | 0.16       | 0.07         | 1.15       |
|       | 6% 충격      | 0.33     | 0.17     | 0.24       | 0.24       | 0.11         | 2.62       |
|       | 10% 충격     | 0.56     | 0.29     | 0.41       | 0.43       | 0.18         | 5.58       |

〈부표 5-4〉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및 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인건비 비중 증가

(단위: %p)

|            | 최저임금<br>충격 | 4인<br>이하 | 5~<br>9인 | 10~<br>29인 | 30~<br>99인 | 100~<br>299인 | 300인<br>이상 |
|------------|------------|----------|----------|------------|------------|--------------|------------|
| 예술·스포츠·여가  | 2% 충격      | 0.20     | 0.13     | 0.01       | 0.02       | 0.00         | 0.03       |
|            | 4% 충격      | 0.42     | 0.27     | 0.02       | 0.04       | 0.00         | 0.05       |
|            | 6% 충격      | 0.67     | 0.42     | 0.03       | 0.06       | 0.00         | 0.08       |
|            | 10% 충격     | 1.20     | 0.73     | 0.06       | 0.09       | 0.00         | 0.13       |
| 창작·예술·여가관련 | 2% 충격      | 0.23     | 0.04     | 0.03       | 0.02       | 0.00         | 0.00       |
|            | 4% 충격      | 0.45     | 0.14     | 0.06       | 0.04       | 0.00         | 0.00       |
|            | 6% 충격      | 0.68     | 0.23     | 0.10       | 0.07       | 0.00         | 0.00       |
|            | 10% 충격     | 1.16     | 0.43     | 0.17       | 0.11       | 0.00         | 0.00       |
| 스포츠·오락관련   | 2% 충격      | 0.19     | 0.16     | 0.01       | 0.02       | 0.00         | 0.03       |
|            | 4% 충격      | 0.41     | 0.33     | 0.01       | 0.04       | 0.00         | 0.06       |
|            | 6% 충격      | 0.66     | 0.50     | 0.02       | 0.05       | 0.00         | 0.09       |
|            | 10% 충격     | 1.19     | 0.85     | 0.04       | 0.09       | 0.00         | 0.16       |
| 단체·수리·개인   | 2% 충격      | 0.11     | 0.05     | 0.06       | 0.01       | 0.00         | 0.00       |
|            | 4% 충격      | 0.22     | 0.09     | 0.11       | 0.02       | 0.00         | 0.00       |
|            | 6% 충격      | 0.33     | 0.15     | 0.17       | 0.03       | 0.00         | 0.00       |
|            | 10% 충격     | 0.58     | 0.27     | 0.30       | 0.05       | 0.00         | 0.00       |
| 수리         | 2% 충격      | 0.02     | 0.00     | 0.01       | 0.00       | 0.00         | 0.00       |
|            | 4% 충격      | 0.05     | 0.01     | 0.02       | 0.00       | 0.00         | 0.00       |
|            | 6% 충격      | 0.07     | 0.01     | 0.04       | 0.00       | 0.00         | 0.00       |
|            | 10% 충격     | 0.13     | 0.03     | 0.06       | 0.00       | 0.00         | 0.00       |
| 기타 개인서비스   | 2% 충격      | 0.23     | 0.14     | 0.13       | 0.06       | 0.00         | 0.00       |
|            | 4% 충격      | 0.46     | 0.29     | 0.25       | 0.11       | 0.00         | 0.00       |
|            | 6% 충격      | 0.70     | 0.44     | 0.38       | 0.17       | 0.00         | 0.00       |
|            | 10% 충격     | 1.22     | 0.82     | 0.67       | 0.29       | 0.00         | 0.00       |

주: 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값은 협회·단체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임.

## 참고문헌

- 강승복(2015),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노동정책연구』 15(2), pp.1-23.
- 남성일(2008),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31(3), pp.1-19.
- 이병희(2008), 「최저임금의 고용유지 및 취업 유입 효과」, 『산업노동연구』 14(1), pp.1-22.
-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Aaronson, Daniel, Sumit Agarwal, and Eric French(2012), “The Spending and Debt Response to Minimum Wage Hik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2(7), pp.3111-3139.
- Card, David, and Alan B. Krueger(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pp.772-793.
- Draca, Mirko, Stephen Machin, and John Van Reenen(2005), “The Impact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on Profits and Prices: Report for Low Pay Commission,” UK Low Pay Commission.
- \_\_\_\_\_ (2011), “Minimum Wages and Firm Profitability,”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3, pp.129-151.
- Piketty, Thomas(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iley, Rebecca and Chiara Rosazza Bondibene(2015), “The Impact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on UK Business,” Report to the Low Pay Commission.

Schmidt, John(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 執筆者

-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 |         |   |
|---------|---|
| ▪ 발행연월일 | 2015년 12월 24일 인쇄<br>2015년 12월 30일 발행  |
| ▪ 발행인   | 방 하 남   |
| ▪ 발행처   | <b>한국노동연구원</b><br>☎ 0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br>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br>☎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인쇄 | 피앤플러스(주) (02) 2269-5680   |
|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록번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15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044-9